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

(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9
----------	-----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28일

발의자 : 강수진, 경수현, 권영애, 김육영,
소형준, 양순임, 이용진,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상징물은 도시의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의미하여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우리구 상징물 관련 규정은 예규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일관된 상징물 관리에 한계가 있어,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우리구 상징물의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상징물의 종류, 제정·변경 또는 폐지(안 제3조~제4조)

다. 상징물의 관리 등, 관련 사업 등(안 제5조~제6조)

라. 상징물의 사용승인, 사용료 등, 위반 시 조치사항(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표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홍보전산과

라. 입법예고 : 2025. 3. 6. ~ 2025. 3.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구가 지정한 휘장, 자연상징물, 구기, 구색, 캐릭터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휘장: 별표 1
2. 자연상징물: 별표 2
3. 구기: 별표 3
4. 구색: 별표 4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징물

제4조(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상징물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시각표시물 표준화 지침 등 상징물별 안내서를 준수하여 활용되어야 한다.

③ 상징물을 제2항의 안내서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③ 사용승인 또는 사용 변경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 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와 납부시기 및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구가 후원하는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징물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9조(위반 시 조치 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게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		
<첨부자료> 개인 및 법인 : 사용계획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		
신청인	회사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변경사유		
변경내용(구체적으로)		
년 월 일 성북구청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표 1] 휘장(제3조 제1호)

1. 기본형



2. 휘장의 의미

▶ 심벌마크

시민의 꿈과 이상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통해 강인한 생명력이 뿜어나감을 표현

- 100개의 점으로 성북100경을 상징
- 형태의 오른편의 곡선은 성북천을 상징
- 화살표방향은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추진력을 상징

▶ 영문이니셜

글로벌 성북으로의 변화

성북의 무한한 가능성과 순환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여 원형을 강조한 서체로 개발

▶ 한글서체

산돌명조420체를 기본으로 리디자인

sb에서 느껴지는 강인함을 보완하여 부드럽고 세련된 이미지로 완성

3. 작도법 (그리드)



4. 색상

4-1. 의미

- ▶ 성북 청색 : 성북천과 청렴한 구정을 상징
- ▶ 성북 녹색 : 성북의 자연경관과 희망을 상징

4-2. 지정색명



- ▶ 별색
Main color (Blue - PANTONE 533 EC) : 성북천과 청렴한 구정을 상징
Sub color (Green - PANTONE 390 EC) : 성북의 자연경관과 희망을 상징
- ▶ 4원색
Main color (Blue - C:95% M:72% Y:15% K:67%)
Sub color (Green - C:31% Y:100% K:3%)

[별표 2] 자연상징물(제3조 제2호)

구목 [감나무]		○ 상징내용: 주렁주렁 열린 감 열매는 풍요를 상징 ※꽃말 : 자애 ○ 특 성: 성북구에는 북한산이 병풍처럼 둘러 앉아 북풍을 막아주어 서울에서 유일하게 감나무 서식 적지로 정릉, 성북동 지역은 토종감나무가 많았으며 감나무골이라고도 하였다. - 조선중기 서유구의 임원십육지에 따르면 “집안에 감나무를 심으면 한해 내내 기쁜 일이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
구화 [진달래]		○ 상징내용: 고결한 아름다움과 청렴을 상징 ※꽃말 : 절제 ○ 특 성: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강한 번식력과 생명력이 있으며 꽃색도 다양하여 분홍색, 진분홍색, 흰색에 자주 분홍색도 있다. 정릉 일대, 북한산, 개운산 주변에 널리 분포한다. 예부터 참꽃이라 불렀고, 신라 33대 성덕왕때 「견우노인 헌화가(獻花歌)」로부터 소월시집 「진달래꽃」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정서가 어린 꽃.
구조 [참 새]		○ 상징내용: 부지런하고 똑똑한 우리나라 텃새로 성북구민을 상징 ○ 특 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부지런하고 비교적 지능이 높은 새로 참새의 접두어 ‘참’에서 알 수 있듯이 진솔한 이미지를 지닌 사람과 가장 가깝게 지내는 새이다. 노후의 기쁨 또는 많은 자손을 의미하기도 한다.

[별표 3] 구기(제3조 제3호)

구기의 규격과 모형



(단위 : cm)

- ▶ PANTONE COLOR – Blue_PANTONE 533EC
Green_PANTONE 390EC
- ▶ PROCESS COLOR – Blue_C:95% M:72% Y:15% K:67%
Green_C:31% Y:100% K:3%

[별표 4] 구색(제3조 제4호)



구색 : 녹색



- 상징내용 : 북한산을 비롯해 산이 많은 구의 환경친화적인 가치관을 의미
- 지정녹색 : PANTONE 349C (#036635)
 - CMYK색상 - C 90%, M 34%, Y 100%, K 27%
 - RGB 색상 - R 3, G 102, B 63
- 활용범위 : 활용 대상 및 목적에 따라 상징내용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색도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음